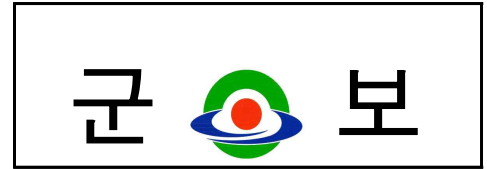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70호 2024. 11. 11.(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려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39호)
-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40호)
-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41호)
-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42호)
-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43호)
-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44호)

훈 령

- 예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예천군 훈령 제464호)

고 시

-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호명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4-139호)

공 고

- 분묘 개장(예천 서분공원 조성사업) 공고(2차)(예천군 공고 제2024-1537호)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563호)

○예천취·정수장 수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4-156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39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6호 중 “종업원50명”을 “종업원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동식물 관련 생산·제조·가공 시설 및 생육·병해충 연구 또는 실증(實證)시설 등이 설치된 집적(集積)시설을 말한다]을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군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2)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과장실	팀 장	직 원
군 본 청	99	38.88	17.92	7.65	7.2
읍 청 사	33	17.92	17.92	7.65	7.2
면 청 사	33	14.80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2)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 리 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민 원 실	$\{(6.55m^2 \times \text{민원담당공무원 수}) \times 1.1\} + \{(0.13m^2 \sim 0.2m^2 \times \text{민원인 수}) \times 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2 / \text{인}$	$11.52m^2 / \text{인}$	$8.64m^2 / \text{인}$	
자 료 실	$(0.3 \sim 0.4m^2) \times \text{공무원수}$			
창 고	$0.72m^2 / \text{인} \sim 0.85m^2 / \text{인}$			
전 산 실	$9.79m^2 \times \text{담당직원 수} \times 1.2$			
민 방 위 대 피 시 설	개소당 $660m^2$ 이상			평시 충무 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2)

실 명		설 계 기 준					
공 조 기 계 설	연 면 적	~3,000	3,000~ 7,500	7,500~ 13,000	13,000~ 18,000	18,000~ 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증장비설	사무공간	$500m^2$		$800m^2$		$1,000m^2$	
	증장비설	$6.6m^2$		$8.4m^2$		$10.2m^2$	
주장비설	사무공간	~1,000	1,000~ 4,000	4,000~ 8,000	8,000~ 12,000	12,000~ 16,000	
	주장비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 20,000	20,000~ 24,000	24,000~ 28,000	28,000~ 32,000		
	주장비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text{직무면적} + \text{부속공간면적} + \text{설비관계면적}) \times 30 \sim 40\%$

2. 군의회 청사

(단위 : m^2)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 의 장 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 원 장 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군 위원회 수 : 1개	
회 의 실	b	본 회 의 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 원 회 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 무 국 장 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 기 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 전 기 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 게 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 청 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36~77㎡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times 0.000015$ + 50

3. 군 종합회관

가. 인구 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 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구 분	공용면적 (기계실포함)	관리/사무	부대시설	계층별 전용실	공연	체육
배분비(%)	29.2	3.7	6.4	12.7	13.6	34.4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2)

구 분	D유형 (인구 10만 미만)	비 고
순면적 (Net Area)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958	
연면적 (Gross Area)	3,341	•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하는 공용면적은 $\pm 5 \sim 10\%$를 별도로 고려한다. •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69.2%	

1) 공연시설

(단위 : m^2)

구 분	시 설 명	면 적
극 장	객 석	160
	무 대	120
	연 습 실	30
	분 장 실 (남 · 여)	10
	분 장 실 전 용 화 장 실	3
	악 실 (1)	15
	악 실 (2)	-
	소 계 ①	338
부 속 시 설	도 구 비 치 창 고	40
	도 구 반 입 실	-
	영 사 실	20
	음 향 실	20
	기 기 실 (무 대)	-
	조 명 실	20
	측 벽 투 광 실	-
	방 송 중 계 실	-
	소 계 ②	100
합 계	계 ① + ②	438
	공 용 부 분	292
	합 계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2)

구 분	시 설 명	면 적
아 동 실	아 동 실 (1)	30
	아 동 실 (2)	-
	부 속 창 고	4
	소 계 ⑤	34
청 소 년 실	청 소 년 실 (1)	50
	청 소 년 실 (2)	-
	소 계 ⑥	50
노 인 실	노 인 실 (남)	30
	노 인 실 (여)	30
	휴 게 실	-
	주 방	-
	건 강 상 담 실	-
	소 계 ⑦	60
부 녀 실	부 녀 실 (1)	50
	부 녀 실 (2)	50
	부 녀 실 (3)	-
	소 계 ⑧	100
공 용 시 설	강 의 실	60
	회 의 실 (1)	70
	회 의 실 (2)	35
	회 의 실 (3)	-
	회 의 실 (4)	-
	다 목 적 실	-
	주 방	-
	기 자 재 창 고	-
	전 시 코 너	-
	소 계 ⑨	165
합 계	계 ⑤ ~ ⑨	409
	공 용 부 분	220
	합 계	629

3) 부대시설

(단위 : m^2)

구 분	시 설 명	D유형 면적
전 시 시 설	전 시 실	54
	작 업 실	12
	창 고	12
	소 계 ⑩	78
도 서 시 설	도 서 실	100
	소 계 ⑪	100
식 당 / 휴 계 시 설	식 당	-
	주 방 및 창 고	-
	휴 계 실	28
	소 계 ⑫	28
합 계	계 ⑩ ~ ⑫	206
	공 용 부 분	88
	합 계	294

4) 체육시설

(단위 : m^2)

구 분	시 설 명	D유형 면적
경 기 장	경 기 장	646
	탈 의 실 (남)	12
	샤 워 실 (남)	12
	탈 의 실 (여)	6
	샤 워 실 (여)	6
	부 속 실 (1)	20
	부 속 실 (2)	30
	대 기 실	15
	장 비 실	60
	무 대 (집 회 용)	95
	트 레 이 닝 실 (소 체 육 실)	-
	소 계 ③	902
관 램 석	관 램 석	210
	상 부 발 코 니	-
	소 계 ④	210
합 계	계 ③ + ④	1,112
	공 용 부 분	278
	합 계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2)

구 분	시 설 명	D유형 면적
사 무 실	관 리 사 무 실	22
	관 장 실	30
	응 접 및 탕 비 실	26
	소 회 의 실	10
	숙 직 실	10
	안 내 인 방 송 코 너	-
	직 능 단 체 사 무 실 (1)	50
	직 능 단 체 사 무 실 (2)	-
	소 계 ⑬	148
합 계	계 ⑬	148
	공 용 부 분	80
	합 계	228

4. 보건소

(단위 : m^2)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진료활동	a	접 수 / 수 납	13.86
		의 무 기 록 창 고	10.89
		대 기 공 간	36.00
		약 국 조 제 실	11.88
		약 국 창 고	11.88
		일 반 진 찰 실	35.64
		치 치 실	17.80
		치 과 진 찰 실	27.54
		치 과 장 비 실	2.70
		치 과 용 압 실	2.16
		소 독 실	8.91
		예 방 접 종 실	17.82
		소 아 놀 이 실	9.90
		수 유 실	7.92
		화 장 실	31.68
		장 애 인 용 화 장 실	4.86
보건사업	b	결 핵 관 리 실	17.82
		상 담 실	35.64
		방 사 선 실	49.92
진료지원	c	임 상 검 사 실	65.34
사무부문	d	소 장 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전 실 (탕 비 실)	9.90
		소 회 의 실	17.82
		사 무 실	직원 수 $\times$ 7.2 m^2
		다 목 적 실	108
		창 고	52.47
		여 자 휴 게 실	40
		당 직 실	13.86
		화 장 실	17.82
설 비	e	기 계 실 및 전 기 실	44
연계공간		로 비 · 복 도 · 계 단	(a+b+c+d+e) $\times$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2)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고
업무공간	a	기 관 장 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 × 7.2	
소요공간	b	조 직 배 양 실	82.5 내외	
		중 합 검 정 실	72.6 내외	
		가 축 질 병 진 단 실	36.3 내외	
		꽃 가 루 은 행	99 내외	
		여 성 기 능 교 육 실	66 내외	
		화 상 정 보 시 스 템	66 내외	
		농 기계 수 리 지 원 센 터	330내외	
		예 비 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공간	c	휴 게 실	직원 수 × 2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 비 · 복 도 · 계 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개정이유

-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 법령상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및 대부요율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대부요율 정비(안 제28조)

- 공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시 대부요율 1% 적용 기준 요건 완화
- 지역경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시 대부요율 적용 규정 신설

나. 공유재산 대부료 등 감면 규정 정비(안 제3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등에 따른 대부료 등 감면 규정 신설

다. 대부료 등 분납 가능 규정 정비(안 제35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등 분납 기준 금액 및 기간 정비

라. 공유재산 수의매각 가능 규정 정비(안 제40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의매각 규정 신설

마. 불부합 용어 정비 및 오타자 수정(안 별표)

-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 담당 → 팀장
- 실·와·팀장실 → 실·과장실, 갱의실 → 탈의실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40호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중 “· 예천군수”를 “① 예천군수”로 하고, “· 군수는”을 “② 군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 군수는 사회복지사”를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로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 군수는 제1항에”를 “② 군수는 제1항에”로 하고, “· 군수는 필요한”을 “③ 군수는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 중 “· 지원계획”을 “②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를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로 하고, “·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를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로 하며, “· 사회복지사”를 “③ 사회복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예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0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41호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수자원봉사자”란 최근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
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8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활
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자원봉사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최근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나.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 규정 신설(안 제18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42호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고용주”란”을 ““고용주”란 관내에서”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농업 경영가구 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공공형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형사업자”란 프로그램(「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

에 근거하여 예천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종전의 제5호) 중 “근로활동”을 “사업 추진”으로 한다.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에 필요한 비용 등

6. 고용농가 산업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보험료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의거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대상을 정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인력을 공급하여 관내 영농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대상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공공형사업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예천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항목 개정(안 제6조)

- 기존 재정지원 항목 일부 삭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비용, 고용 농가 및 농업인 보험료 등 지원 항목 추가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43호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 면 복지 회 관 현 황

연번	명 칭	위 치
1	호 명 읍 복 지 회 관 (늘 품 복 지 센 터)	예 천 군 호 명 읍 봉 호 로 4205-20
2	용 문 면 복 지 회 관	예 천 군 용 문 면 용 문 경 천 로 1209-5
3	효 자 면 복 지 회 관	예 천 군 효 자 면 도 효 자 로 1490-6
4	은 풍 면 복 지 회 관 (가동)	예 천 군 은 풍 면 은 풍 로 78-16
4-1	은 풍 면 복 지 회 관 (나동) (다 숨 문 화 복 지 센 터)	예 천 군 은 풍 면 은 풍 로 78-18
5	감 천 면 복 지 회 관 (가동)	예 천 군 감 천 면 충 효 로 1389
5-1	감 천 면 복 지 회 관 (나동) (행 복 문 화 센 터)	예 천 군 감 천 면 포 리 2 길 12-3
6	보 문 면 복 지 회 관 (가동)	예 천 군 보 문 면 미 호 길 148
6-1	보 문 면 복 지 회 관 (나동) (건 강 나 눔 센 터)	예 천 군 보 문 면 무 근 열 길 3
7	유 천 면 복 지 회 관	예 천 군 유 천 면 예 성 로 689
8	용 궁 면 복 지 회 관	예 천 군 용 궁 면 용 궁 로 134-8
9	개 포 면 복 지 회 관 (가동)	예 천 군 개 포 면 신 음 리 길 28-14
9-1	개 포 면 복 지 회 관 (나동) (행 복 열 린 센 터)	예 천 군 개 포 면 신 음 리 길 28-22
10	지 보 면 복 지 회 관	예 천 군 지 보 면 소 화 1 길 20-5
11	풍 양 면 복 지 회 관	예 천 군 풍 양 면 낙 상 2 길 60

◇개정이유

- 관내 복지회관(4개소)이 신설됨에 따라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별표에 읍면복지회관 현황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읍면복지회관 현황 변경(안 별표)
 - 은풍면 복지회관(다솜문화복지센터) 추가
 - 감천면 복지회관(행복문화센터) 추가
 - 보문면 복지회관(건강나눔센터) 추가
 - 개포면 복지회관(행복열린센터) 추가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44호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 제목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예천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헌혈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천군인 경우에 한한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급
2.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1회 무료 시행

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천군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예천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헌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회의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를 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항 및 헌혈추진 협의회 운영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헌혈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

- 헌혈자에게 지역화폐 등 지급 및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시행
-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포상

나.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등의 규정 신설(안 제9조 ~ 제15조)

- 헌혈추진협의회 협의 사항
- 헌혈추진협의회 위원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방법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예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64호

예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상황관리”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

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이란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상황실 구성 및 임무

제3조(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는다. 다만,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는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 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간부 및 경상북도 상황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4.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 조치 지휘
5.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6.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장비의 관리 총괄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전파 및 보고
2.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3.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4.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5.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
6.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
7.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8.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수습 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조
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및 복무

제6조(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다만, 평일 야간 및 공휴일은 본청 당직실에서 운영한다.

② 제5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③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주간: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직원
2. 평일 야간 및 공휴일: 본청 당직근무자

④ 제3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달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명절, 연말연시, 연휴기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 09:00부터 18:00까지
2. 야간근무: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② 상황근무자는 근무시간이 종료했을 때(또는 다음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 상황근무자에게 재난관리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인계해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의 근무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주간: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사무실

2. 평일 야간 및 공휴일: 본청 당직실

④ 상황근무자는 별표의 근무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⑤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8조(근무신고) 상황근무자는 근무를 시작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9조(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 등에 그 사실을 보고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부군수 및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의 종류 및 작성 방법)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
2. 수시보고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

②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상황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를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체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체계)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 및 장비관리

제12조(기록관리)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
·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황실 근무일지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별표의 상황근무자 근무
수칙,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
황실, 관계 기관의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
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총괄
하며, 이를 위해 상황실에 재난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
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황근무자 근무 수칙(제7조제4항 관련)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10분 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 상황근무자는 1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前) 상황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 전 상황근무자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정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작성
 - 수시: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최초-중간-최종)
4. 상황보고 및 전파
 - 군수, 부군수에게는 상황실장이 직접 보고
 -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또는 FAX 등을 활용하여 보고·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수신:

시행일시: 20

접수일시: 20 :

발신:

(서명 또는 인)

제목:

1. 일 시:

2. 장 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 재산피해 :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

나. 동원사항

-

6. 지원 및 협조사항

- .

7. 향후 전망 및 대책

-

작성 방법

1. 사망자·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담 당 자	팀 장	과 장

년	월	일	요일
---	---	---	----

1. 근무자

주간	소속:	직급:	성명:	야간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2. 중점 관리사항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등 재난관리주관에서 지시한 중점 관리사항

3. 주요 상황 처리현황

일시		발신기관	보고수단	내용
접수	보고(전파)	수신기관		
00:00	00:00	00군	휴대전화	-
		재난안전상황실		
00:00	00:00	행정안전부	NDMS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4. 주요 재난상황 접수 및 조치사항

건 명	접수시간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5. 기타(기상특보, 주요 언론사항, 특기사항 등)

○ TV, 인터넷뉴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 읍면 상황근무는 당직보고와 같음

※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예천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총칙(안 제1조 ~ 제2조)
- 나. 상황실 구성 및 임무(안 제3조 ~ 제5조)
- 다. 상황실 운영 및 복무(안 제6조 ~ 제8조)
- 라. 상황보고 및 전파(안 제9조 ~ 제11조)
- 마. 기록 및 장비관리(안 제12조 ~ 제13조)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호명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호명읍 오천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호명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참고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아임(<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체육사업소(☎054-650-6411)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별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7	호명지구	예천군 호명읍 일원	256,199	-	256,199	예고 2019-10 (2019.02.11.)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56,199	-	256,199	100.0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137,684	-	137,684	53.7	
상업용지	상업용지	6,610	-	6,610	2.6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111,905	-	111,905	43.7	
	도로	46,840	감) 4	46,836	18.3	
	주차장	2,040	-	2,040	0.8	
	광장	5,114	감) 392	4,722	1.8	
	공원	20,051	감) 68	19,983	7.8	
	녹지	14,605	감) 30	14,575	5.7	
	공공공지	283	-	283	0.1	
	공공청사	10,251	감) 1,871	8,380	3.3	
	교육문화시설	12,721	-	12,721	5.0	
	체육시설	-	증) 2,365	2,365	0.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23	4,632	46,836	2	507	5,063	10	1,442	15,867	11	2,683	25,906	
대로	-	-	-	-	-	-	-	-	-	-	-	-	
중로	6	2,268	28,979	-	-	-	3	638	9,440	3	1,630	19,539	
소로	17	2,364	17,857	2	507	5,063	7	804	6,427	8	1,053	6,367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호1	15	집산 도로	203	오천리 207-2	오천리 146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중로	2	호2	15	집산 도로	423	오천리 312	오천리 208-1	일반 도로	-	경고 2009-483 (2009.11.05.)	지방도 924호선
기정	중로	2	호3	15	집산 도로	12	오천리 55-1	오천리 55-1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중로	3	호1	12	집산 도로	677	오천리 310	오천리 산17-3	일반 도로	-	경고 2009-483 (2009.11.05.)	지방도 924호선
기정	중로	3	호2	12	국지 도로	749	오천리 74-11	오천리 163-1	일반 도로	공공 청사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중로	3	호3	12	국지 도로	204	오천리 72-1	오천리 211-3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1	호1	10	국지 도로	225	오천리 201-2	오천리 157-2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1	호2	10	국지 도로	282	오천리 59-1	오천리 67-3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2	호1	8	국지 도로	99	오천리 199-1	오천리 157-8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2	호2	8	국지 도로	132	오천리 315	오천리 산24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2	호3	8	국지 도로	117	오천리 74-6	오천리 67-1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변경	소로	2	호3	8	국지 도로	117	오천리 74-6	오천리 67-1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호4	8	국지 도로	108	오천리 149-1	오천리 151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2	호5	8	국지 도로	128	오천리 72	오천리 310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호6	8	국지 도로	85	오천리 68	오천리 70-1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2	호7	8	국지 도로	135	오천리 67-1	오천리 67-4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3	호1	6	국지 도로	81	오천리 196	오천리 305-9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3	호2	6	국지 도로	74	오천리 199-1	오천리 155-1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3	호3	6	국지 도로	136	오천리 157-15	오천리 162-2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3	호8	6	국지 도로	145	오천리 74-9	오천리 67-1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3	호9	6	국지 도로	62	오천리 312	오천리 59-1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3	호10	4	국지 도로	381	오천리 156-3	오천리 170-3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3	호11	4	국지 도로	143	오천리 197-1	오천리 284-2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소로	3	호12	4	국지 도로	31	오천리 221-1	오천리 229-5	일반 도로	-	예고 2019-10 (2019.02.11.)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호3	소로2-호3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B = 8m, L = 117m	· 늘품복지센터 경계변 불합리한 도로 선형 정비에 따른 일부구간 변경

나) 주차장 (변경없음)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개소	2,040	-	2,040		
기정	호1	주차장	호명읍 오천리 197 일원	560	-	560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2	주차장	호명읍 오천리 146 일원	620	-	620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3	주차장	호명읍 오천리 70-1 일원	860	-	860	예고 2019-10 (2019.02.11.)	

2) 공간시설 (변경)

가) 광장 (변경)

(1)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개소	5,114	감) 392	4,722		
기정	호1	광 장	근린광장	호명읍 오천리 210-3 일원	1,412	-	1,412	예고 2019-10 (2019.02.11.)	
변경	호2	광 장	근린광장	호명읍 오천리 67-12 일원	1,867	감) 392	1,475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3	광 장	교통광장	호명읍 오천리 208-1도	1,835	-	1,835	예고 2023-119 (2023.08.24.)	

■ 광장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호2	광 장	· 근린광장 면적 축소 - A = 1,867 → 1,475㎡ (감 392㎡)	·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에 따른 면적 축소

나) 공원 (변경)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개소	20,051	감) 68	19,983		
기정	호1	호명 근린공원	근린공원	호명읍 오천리 산23 일원	11,078	-	11,078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1	호명1 소공원	소공원	호명읍 오천리 197 일원	5,415	-	5,415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2	호명2 소공원	소공원	호명읍 오천리 59-1 일원	1,730	-	1,730	예고 2019-10 (2019.02.11.)	
폐지	호3	호명3 소공원	소공원	호명읍 오천리 산25-9 일원	1,828	감) 1,828	-	예고 2023-71 (2023.06.01.)	
신설	호3	호명3 소공원	소공원	호명읍 오천리 67-10 일원	-	증) 1,760	1,760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호3	호명3 소공원	· 소공원 폐지 - A = 1,828㎡	·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에 따른 폐지
호3	호명3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A = 1,760㎡	·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에 따라 폐지 되는 소공원을 대체하여 신설

다) 녹지 (변경)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개소	14,605	감) 30	14,575		
기정	호1	신도시 연결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호명읍 오천리 60-2 일원	2,974	-	2,974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2	신도시 연결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호명읍 오천리 255 일원	1,151	-	1,151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1	경관녹지	경관녹지	호명읍 오천리 170-14 일원	1,892	-	1,892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2	경관녹지	경관녹지	호명읍 오천리 산18-1 일원	2,886	-	2,886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3	경관녹지	경관녹지	호명읍 오천리 170-5 일원	3,179	-	3,179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4	경관녹지	경관녹지	호명읍 오천리 284-1 일원	693	-	693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5	경관녹지	경관녹지	호명읍 오천리 284-1 일원	98	-	98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6	경관녹지	경관녹지	호명읍 오천리 산26 일원	495	-	495	예고 2019-10 (2019.02.11.)	
기정	호7	경관녹지	경관녹지	호명읍 오천리 산78-3 일원	422	-	422	예고 2019-10 (2019.02.11.)	
변경	호8	경관녹지	경관녹지	호명읍 오천리 산25-9 일원	815	감) 30	785	예고 2019-10 (2019.02.11.)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호8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축소 - A = 815 → 785㎡ (감 30㎡)	· 늘품복지센터 경계변 불합리한 도로 선형 정비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축소

라) 공공공지 (변경없음)

(1)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개소	283	-	283		
기정	호1	공공공지	호명읍 오천리 195-2 일원	283	-	283	예고 2019-10 (2019.02.11.)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가) 공공청사 (변경)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개소	10,251	감) 1,871	8,380		
변경	호1	호명 읍사무소	공공청사	호명읍 오천리 67-12 일원	6,268	감) 1,888	4,380	예고 2019-10 (2019.02.11.)	
변경	호2	늘품 복지센터	공공청사	호명읍 오천리 74-1 일원	3,983	증) 17	4,000	예고 2020-64 (2020.08.03.)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호1	호명 읍사무소	· 공공청사 면적 축소 - A = 6,268 → 4,380㎡ (감 1,888㎡)	·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 및 대체되는 소공원 신설에 따른 면적 축소
호2	늘품 복지센터	· 공공청사 면적 확장 - A = 3,983 → 4,000㎡ (증 17㎡)	· 늘품복지센터 경계변 불합리한 도로 선형 정비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확장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최소개발규모(권장) (변경없음)

위 치	최소개발규모(㎡)	비고
계획관리지역	60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주거용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 구			비고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137,684	
주거용지	A	1	호명읍 오천리 170-20 일원	11,930	
		2	호명읍 오천리 167-2 일원	14,611	
		3	호명읍 오천리 182 일원	12,918	
		4	호명읍 오천리 163-1 일원	4,478	
		5	호명읍 오천리 158 일원	9,028	
		6	호명읍 오천리 156-1 일원	4,410	
		7	호명읍 오천리 197-2 일원	3,767	
		8	호명읍 오천리 150 일원	9,099	
		9	호명읍 오천리 152 일원	7,025	
		10	호명읍 오천리 154-1 일원	2,152	
		11	호명읍 오천리 99-1 일원	5,197	
		12	호명읍 오천리 145 일원	9,127	
		13	호명읍 오천리 205 일원	1,461	
		14	호명읍 오천리 212-3 일원	8,920	
		15	호명읍 오천리 70-1 일원	5,196	
		16	호명읍 오천리 67 일원	6,287	
		17	호명읍 오천리 66-1 일원	3,827	
		18	호명읍 오천리 59-1 일원	9,893	
		19	호명읍 오천리 59-1 일원	3,723	
		20	호명읍 오천리 59-1 일원	2,966	
		21	호명읍 오천리 225 일원	1,669	

나) 상업용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 구			비고
		가구번호	위 치	면 적(m ²)	
합 계			-	6,610	
상업용지	B	1	호명읍 오천리 211-1 일원	6,610	

다) 공공시설용지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 구				비고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기정	25,012	
				변경	25,506	
공공청사	C	소 계	-	기정	10,251	
				변경	8,380	
		1	호명읍 오천리 산25-5 일원	기정	6,268	
			호명읍 오천리 67-12 일원	변경	4,380	
		2	호명읍 오천리 74-1 일원	기정	3,983	
				변경	4,000	
교육 문화시설	D	1	호명면 오천리 206 일원	기정	12,721	
주차장	E	소 계	-	기정	2,040	
		1	호명읍 오천리 197 일원	기정	560	
		2	호명읍 오천리 146 일원	기정	620	
		3	호명읍 오천리 70-1 일원	기정	860	
체육시설	F	1	호명읍 오천리 산25-9 일원	신설	2,365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건축물에 대한 용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21	A1 ~ A21	허용용도 (규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군계획 조례」상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6호의 종교 시설 중 봉안당,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은 제외												
		권장용도	-												
		불허용도 (규제)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시설												
		건 폐 율 (규제)	· 60% 이하												
		용 적 률 (규제)	· 150% 이하												
		높 이 (규제)	·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 중·저밀 배치를 통해 녹지공간, 쉼터 등으로 활용 권장 ·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를 권장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 향상 유도												
		형 태	· 전체적인 형태 및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 · 입체적 디자인 10~20% 적용을 권장하여 시각적으로 단조로운 이미지 연출 최소화 유도 · 경사지붕 적용을 권장												
		색 채	<table><tr><td>구분</td><td>주조색</td><td>보조색</td><td>강조색</td></tr><tr><td>색상</td><td>N, YR계열</td><td>N, YR계열</td><td>YR, Y계열</td></tr><tr><td>명도/채도</td><td>4이상/8이하</td><td>4이상/8이하</td><td>4이상/8이하</td></tr></table>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성 향상을 위해 목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질 적용 권장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YR계열	N, YR계열	YR, Y계열	명도/채도	4이상/8이하	4이상/8이하	4이상/8이하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YR계열	N, YR계열	YR, Y계열												
명도/채도	4이상/8이하	4이상/8이하	4이상/8이하												
건 축 선 (규제)	· 보차혼용통로 경계선에 건축한계선 지정(지정블록 : A1, A3, A9의 보차 혼용통로 경계부)														
기 타	·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함														

나)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1	허용용도 (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군계획 조례」상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6호의 종교 시설 중 봉안당,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15미터 이상 폭원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15미터 이상 폭원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												
		불허용도 (규제)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시설												
		건 폐 율 (규제)	60% 이하												
		용 적 륜 (규제)	150% 이하												
		높 이 (규제)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주변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경관 향상을 위한 개방적인 배치 권장												
		형 태	- 입체적 디자인 10~20% 적용을 권장하여 단조로운 이미지 최소화 유도 - 전면, 측면, 후면의 유사한 이미지 연출을 통해 4면이 정면화가 되는 건축물 경관 형성 권장 - 연접한 건축물과의 층고, 처마선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1층벽면 중 도로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서터로 계획 - 평지붕 적용을 권장하며, 옥상녹화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권장												
		색 채	<table><tr><td>구분</td><td>주조색</td><td>보조색</td><td>강조색</td></tr><tr><td>색상</td><td>N, YR계열</td><td>YR계열</td><td>YR, R계열</td></tr><tr><td>명도/채도</td><td>1이상/8이하</td><td>1이상/8이하</td><td>1이상/8이하</td></tr></table> 과도하고 화려한 색채의 적용은 지양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YR계열	YR계열	YR, R계열	명도/채도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YR계열	YR계열	YR, R계열												
명도/채도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건 축 선 (규제)	건축한계선 1m 지정(지정블록 : B1의 전면도로변)														
기 타	-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함 -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개방적인 외부공간 형성 권장														

다) 공공시설용지 (변경)

(1) 공공청사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C2	C1, C2	허용용도 (규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이 공공업무 주 시설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대시설은 안내실, 화장실 등 주 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 편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의 2항의 시설 중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규제)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시설												
		건 폐 율 (규제)	· 60% 이하												
		용 적 률 (규제)	· 150% 이하												
		높 이 (규제)	·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 개방적이고, 열린 배치를 통해 시각적 쾌적성 및 미기후적으로 양호한 경관 형성 · 주변 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 권장												
		형 태	· 과도하고, 화려하며, 일차원적인 형태 및 외관의 적용은 지양 · 입체적 디자인 10~20% 적용 권장												
		색 채	<table><tr><td>구분</td><td>주조색</td><td>보조색</td><td>강조색</td></tr><tr><td>색상</td><td>N, GY계열</td><td>GY, G계열</td><td>G계열</td></tr><tr><td>명도/채도</td><td>1이상/8이하</td><td>1이상/8이하</td><td>1이상/8이하</td></tr></table> · 재질 및 색채는 주변 자연경관, 건축물 등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계획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GY계열	GY, G계열	G계열	명도/채도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GY계열	GY, G계열	G계열												
명도/채도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건 축 선 (규제)	-														
기 타	·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개방적인 외부공간 형성 권장														

(2) 교육문화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D1	허용용도 (규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군계획 조례」상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6호의 종교 시설 중 봉안당,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용도 (규제)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시설												
		건 폐 율 (규제)	· 60% 이하												
		용 적 률 (규제)	· 150% 이하												
		높 이 (규제)	·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 개방적이고, 열린 배치를 통해 시각적 쾌적성 및 미기후적으로 양호한 경관 형성 · 주변 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 권장 · 학교 건축시는 남향배치 권장												
		형 태	· 과도하고, 화려하며, 일차원적인 형태 및 외관의 적용은 지양 · 입체적 디자인 10~20% 적용 권장												
		색 채	<table border="1"><tr><td>구분</td><td>주조색</td><td>보조색</td><td>강조색</td></tr><tr><td>색상</td><td>N, GY계열</td><td>GY, G계열</td><td>G계열</td></tr><tr><td>명도/채도</td><td>1이상/8이하</td><td>1이상/8이하</td><td>1이상/8이하</td></tr></table> · 재질 및 색채는 주변 자연경관, 건축물 등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계획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GY계열	GY, G계열	G계열	명도/채도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GY계열	GY, G계열	G계열												
명도/채도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건 축 선 (규제)	-														
기 타	·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개방적인 외부공간 형성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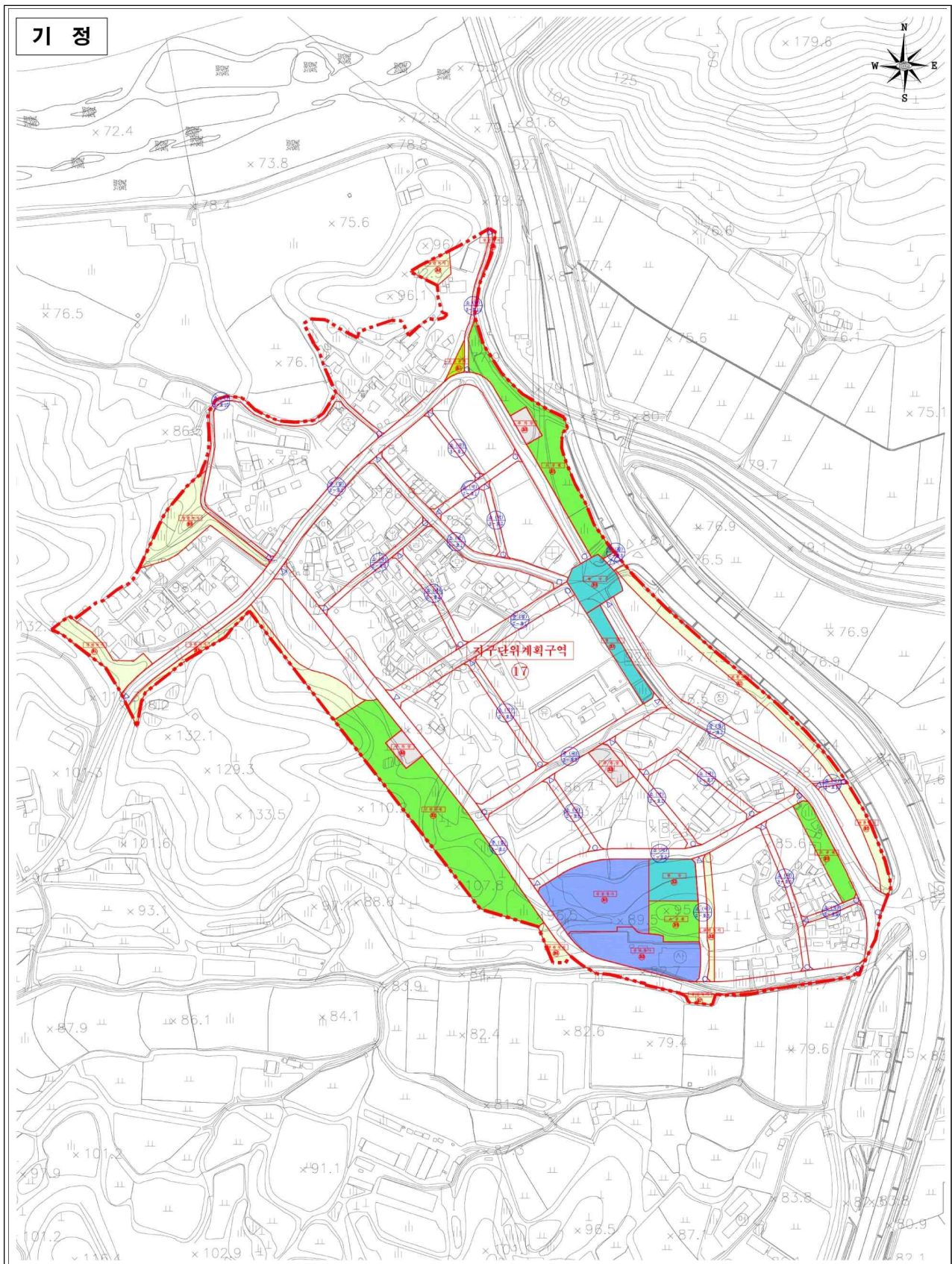
(3)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1 ~ E3	E1 ~ E3	허용용도 (규제)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 이하에 한함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함 - 주차장 외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에 한함
		권장용도	-
		불허용도 (규제)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시설
		건 폐 율 (규제)	60% 이하 (단,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90% 이하)
		용 적 륜 (규제)	150% 이하 (단,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350% 이하)
		높 이 (규제)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 개방적이고, 열린 배치를 통해 시각적 쾌적성 및 미기후적으로 양호한 경관 형성 - 주변 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 권장
		형 태	- 과도하고, 화려하며, 일차원적인 형태 및 외관의 적용은 지양 - 입체적 디자인 10~20% 적용 권장
		색 채	재질 및 색채는 주변 자연경관, 건축물 등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계획
		건 축 선 (규제)	-
		기 타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개방적인 외부공간 형성 권장

(4) 체육시설 (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F1	F1	허용용도 (규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의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이 운동시설 주 시설의 면적을 초과 할 수 없음) - 부대시설은 사무실, 화장실 등 주 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 하는 시설 - 편익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권장용도	-												
		불허용도 (규제)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시설												
		건 폐 율 (규제)	60% 이하												
		용 적 률 (규제)	150% 이하												
		높 이 (규제)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 개방적이고, 열린 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쾌적한 경관 형성 - 주변 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 권장												
		형 태	- 과도하고, 화려하며, 일차원적인 형태 및 외관의 적용은 지양 - 입체적 디자인 10~20% 적용 권장												
		색 채	<table><tr><td>구분</td><td>주조색</td><td>보조색</td><td>강조색</td></tr><tr><td>색상</td><td>N, GY계열</td><td>GY, G계열</td><td>G계열</td></tr><tr><td>명도/채도</td><td>1이상/8이하</td><td>1이상/8이하</td><td>1이상/8이하</td></tr></table> 재질 및 색채는 주변 자연경관,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GY계열	GY, G계열	G계열	명도/채도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GY계열	GY, G계열	G계열												
명도/채도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1이상/8이하												
건 축 선 (규제)	-														
기 타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개방적인 외부공간 형성 권장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변경

• 근린광장(호2) 면적 축소
A = 1,867 → 1,475㎡ (감 392㎡)

• 소공원(호3) 신설
A = 1,760㎡

• 공공청사(호1) 면적 축소
A = 6,268 → 4,380㎡ (감 1,888㎡)

• 공공청사(호2) 면적 확장
A = 3,983 → 4,000㎡ (증 17㎡)

• 소로2-호3호선 선형 변경
B = 8m, L = 117m

• 경관녹지(호8) 면적 축소
A = 815 → 785㎡ (감 30㎡)

• 소공원(호3) 폐지
A = 1,828㎡



분묘 개장[예천 서본공원 조성사업] 공고 [2차]

「예천 서본공원 조성사업」사업지 내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예천군 대심리, 서본리 서본공원 조성사업 편입 부지 일대

2. 분묘 기수 : 404기

공 사 명	위 치				기수	비고
	군	읍	리	지번		
예천 서본공원 조성사업	예천	예천	대심	34-8	8	
				40-2	9	
				36	2	
				37	3	
			서본	239-1	1	
				65-14	9	
				65-2	4	
				73-2	3	
				71	1	
				244	27	
				245	49	
				247	217	
				248	67	
				251	4	

2. 개장사유 : 예천 서본공원 조성사업 구간 내 편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소재 납골당

5.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5년

6.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2. 30.

7. 신고 및 문의처 : 예천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054-650-6315)

8. 신고시 구비서류

가. 기존 분묘의 위치 확인 및 사진 촬영

나.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공사 중 추가 발견 분묘 포함)
및 유연분묘 중 연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예 천 군



예천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내·외 기업과의 교류 활성화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교류협력사업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천군과 관내·외 기업 간 관계 맺기 사업 추진을 통해 관계인구를 발굴·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업 등 교류·협력사업 지원 범위(안 제37조)

- 기업 등이 참여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행사 신설

나. 기업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내용(안 제38조)

- 기업 생산품 홍보 및 투자유치 촉진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경비
- 기업 등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
- 투자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경비 및 기념품 지급 등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uniko689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전화: 054-650-68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업”이란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기업인”이란 제8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10. “근로자”란 제8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업 등”이란 기업, 기업인 및 근로자를 말한다.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고,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기업 등 교류·협력사업 지원) 군수는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생산품 홍보 및 투자유치 촉진 행사
2. 기업 등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 투자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4. 그 밖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지원내용) 제3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생산품 홍보 및 투자유치 촉진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경비
2.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및 경비 등
3. 투자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경비 및 기념품 지급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기업”이란 제4호부터 제7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u><신 설></u>	9. “기업인”이란 제8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u><신 설></u>	10. “근로자”란 제8호에 따른 기 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u><신 설></u>	11. “기업 등”이란 기업, 기업인 및 근로자를 말한다.
8. ~ 26. (생 략)	12. ~ 30. (현행 제8호부터 제2 6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제37조(기업 등 교류·협력사업 지원) 군수는 기업 등과의 교류 · 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생산품 홍보 및 투자유 치 촉진 행사
	2. 기업 등이 참여하는 문화·

<u><신 설></u> <u>제37조 ~ 제43조 (생 략)</u>	<u>체육행사</u> <u>3. 투자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u> <u>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u> <u>숍, 설명회, 간담회</u> <u>4. 그 밖에 투자유치 활성화를</u> <u>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사업</u> <u>제38조(지원내용) 제37조에 따른</u> <u>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u> <u>와 같다.</u> <u>1. 기업 생산품 홍보 및 투자유</u> <u>치 촉진 행사 추진을 위한 임</u> <u>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u> <u>영비 및 참석자 식비, 숙박비,</u> <u>교통비 등 경비</u> <u>2.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u> <u>문화·체육행사에 필요한 행</u> <u>사 운영비 및 경비 등</u> <u>3. 투자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u> <u>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u> <u>숍,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식</u> <u>비, 숙박비, 교통비 등 경비 및</u> <u>기념품 지급 등</u> <u>제39조 ~ 제45조 (현행 제37조부터</u> <u>제43조까지와 같음)</u>
---	--

예천취·정수장 수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예천취·정수장 수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1.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예천취·정수장 수해복구사업(예천취수장 집수매거 수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나.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일원

나. 면 적 : 869㎡

다. 규 모 :

- 집수매거 설치(권선형스크린관 D800mm) L=190m 등
- 여과사 삭취 및 보사 1식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4. 11. ~ 2025. 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해당없음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가.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1층, 맑은물사업소

나. 기 간 : 2024. 11. 11. ~ 2024. 11. 26. (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054-650-6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